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73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63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1.

다. 회 부 일 : 2026.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III. 검토의견

1.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63호)

현 행	개 정 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31.12.31.</u>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u>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특례 유형 또는 존속기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3호는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683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부와 13개 시·도지회를 두고 있고,

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며²⁾,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지방의료원·민간에 대한 위탁 방식으로 약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³⁾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부·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임산부의 산후조리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⁴⁾, 건물임차료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유재산 무상 대여를 통해 협회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모자보건법」 및 동법 개정안 제22조는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

4)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⁵⁾.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모자보건법」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9683호)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6. 12. 31.</u>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31. 12. 31.</u>

문의처

02)6788-5160